

경기대학교 학생회칙 (개정 2021. 04. 05.)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경기대학교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인 학문 탐구와 올바른 생명력 있는 대학문화를 건설하여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회원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여 나아가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이하 '본교') 내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에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 전반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 개진과 결정 참여의 권리를 가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

④ 본회의 회원의 권리는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⑤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⑥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비납부를 독려할 수 있으나 의무로서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

⑦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 (학교 당국과의 관계)

①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 협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각 기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③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 당국 제반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1. 학생의 권익과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2. 학생활동 및 학생 신분에 관련되는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활동에 관한 회원의 징계 사항
4. 본교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회원과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④ 본회의 제반회의에서 그 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 당국에 그 회의의 참석권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본회의 모든 구성을 통틀어 '자치기구'라 칭하고 각 자치기구의 특성과 역할에 따라 의결기구, 운영 및 집행조직, 자치단체, 산하기구 등으로 분류한다. 본회는 의결기구로서 학생총회,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를 두고 운영 및 집행조직으로서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경상, 공과, 관광 문화, 사회과학, 예술, 인문, 자연과학, 체육 이상 8개 단과대학), 학부·전공·학과 학생회(2021년 기준 학과 18개, 학부 15개, 전공 47개 명칭 생략)로 구성된다. 그 외 자치단체로서 수원 동아리 연합회, 서울 동아리 연

합회, 신문방송사, 사생자치회가 있으며 기타 산하기구를 둘 수 있다.

제8조 (의결)

- ① 본 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 학운위, 중운위, 총·부총학생회장 순서로 한다.
- ② 총·부총학생회장은 본 회와 학내외 긴급 상황 및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 비상 직권이 허용된다.
- ③ 총학생회 주관의 단독행사 및 단기사업의 경우 의사결정권은 해당 행사 및 사업을 관장하는 주체에게 있다. 단, 본 회의 회원을 아우르는 대규모의 행사 혹은 장기 사업의 경우 재정적인 부분과 진행 및 과정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중운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보고 및 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학교 외부 활동)

- ① 본회는 그 목적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학교 외부의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할 수 있다.
- ② 본회가 학교 외부의 여러 단체에 가입 및 탈퇴 시에는 중운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10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12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3조 (권한)

- ① 학생총회는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으며, 본 회에 관련된 중요 안전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의 권한을 가진다.
- ② 필요시 안전에 관련된 학교 당국의 부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답변 및 의견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③ 본 회에 관련된 중요 안전의 의결을 위해 학생 총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④ 하위 의결기구인 학운위의 모든 권한을 귀속한다.

제14조 (소집 및 공고)

- ①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학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500인 이상, 학운위 재적인원 1/3 이상, 중운위 재적인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학생회장이 14일 이내에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3. 수원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는 별도로 각 캠퍼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
- ② 학생총회의 소집은 반드시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본 회와 학내외 긴급 상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학생총회 기간 중 진행되는 강의의 경우 학교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임시 휴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개회 및 의결)

- ① 학생총회는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①항의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의결 권한은 확운위 이상의 의결기구로 위임되며 재적 인원 2/3 이상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안건상정) 학생총회의 안건은 확운위, 중운위 이상의 의결기구 및 총·부총학생회장의 발의로 상정할 수 있다.

제17조 (학생총투표)

①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 확운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발의되어 시행할 수 있는 최고 의결 수단(의사 결정 방식)이다.

② 학생 총투표는 확운위의 경우 재적인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시행 가능하며 본 회의 회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생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학생 총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확대운영위원회

제18조 (지위) 확대운영위원회(이하'확운위')는 본 회의 의결기구이다.

제19조 (구성)

① 확운위는 총학생회(총·부총학생회장, 집행국 전 임원), 각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경상, 공과, 관광, 사회과학, 예술, 인문, 자연과학, 체육 이상 8개의 단과대학), 각 학과 학생회장 (2021년 기준 65개 학과명 생략), 수원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서울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신문방송사 정·부회장, 사생자치회 정·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①항의 구성을 확운위의 최소 단위로 정한다. 단, 필요에 따라 중운위원 내부 협의를 통해 참관인으로 추가할 수 있으나 추가된 인원을 포함하여 각 단위별로 의결권과 발언권은 당해 중운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각 단과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대표자에게 확운위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운위의 심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제20조 (의장) 확운위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문구 수정 2015.09.17.] 단, 총학생회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21조 (업무 및 권한)

① 학생총회에서 미의결된 안건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을 가진다.

③ 총학생회장의 탄핵발의권을 가진다. 단 총학생회장 탄핵 발의에 관한 확운위의 의장은 단과대학 학생회장 중 1인이 맡는다.

④ 발의된 학생회칙 개정안의 의결권을 가진다.

⑤ 학칙 개정의 발의 및 사전 협의권을 가진다.

⑥ 본 회의 사업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⑦ 하위 의결기구인 중운위의 모든 권한을 귀속하며, 중운위의 출석 및 답변 요구권을 가진다.

⑧ 신규 자치단체의 승인권을 가진다.

⑨ 본 회의가 학교 외부의 여러 단체에 가입 및 탈퇴 시 심의, 승인권을 가진다.

제22조 (소집 및 공고)

① 확운위는 확운위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중운위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학생회장이 7일 이내에 반드시 소집한다.

② 확운위의 소집은 반드시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개회 및 의결) 확운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중앙운영위원회

제24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본 회의 상설적 의결기구이다.

제25조 (구성) 중운위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사무국장, 정책국장, 복지국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경상, 공과, 관광문화, 사회과학, 예술, 인문, 자연과학, 체육 이상 8개의 단과대학), 수원 동아리연합회 회장, 서울 동아리연합회 회장, 신문방송사 의장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중운위원 내부 협의 및 심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6조 (의장) 중운위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27조 (업무 및 권한)

① 학생회비를 책정, 편성하여 확운위 이상의 의결기구에 상정한다.

② 본 회의 제반사항을 검토, 조정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전체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④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⑤ 총학생회의 업무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⑥ 확운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미의결된 안건의 의결권을 가진다.

⑦ 확운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발언해야 한다.

제28조 (소집 및 공고)

① 중운위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눈다.

1. 정기 중운위는 매주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중운위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단, 특정 기간 동안 주당 1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협의를 통해 최소 월 2회 이상 진행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임시 중운위는 중운위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총학생회장의 직권으로 중운위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중운위는 소집 3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9조 (개회 및 의결) 중운위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총학생회

제1절 총·부총학생회장

제30조 (지위)

① 총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의결기구로서 학생총회, 확운위, 중운위에서의 의장직과 운영·집행 조직으로서 총학생회에서의 의장직을 겸임한다. 총학생회장은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총학생회장 1인과 부총학생회장 2인(부총학생회장은 수원 캠퍼스 1인, 서울 캠퍼스는 관광

문화대학 회장이 대표하여 부총학생회장직을 겸직한다.)으로 하며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위의 승계 및 권한과 업무를 대행한다.

제31조 (업무 및 권한)

- ① 총학생회장은 본 회의 활동 및 회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② 총·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의 국장 및 차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가진다.
- ③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결산안을 편성하여 중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운위에 제출한다.
- ④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 ⑤ 총학생회장은 본 회칙에 의거하여 발의, 심의, 상정에 따른 일정 절차를 거쳐 학운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의결로써 개정된 회칙을 3일 이내 공포한다.
- ⑥ 총·부총학생회장은 중대한 사항을 조사, 심의, 해결할 수 있는 특별 기구를 중운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심의와 인준을 거쳐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⑦ 총·부총학생회장은 본 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 ⑧ 총학생회장은 기타 총학생회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32조 (임기) 총·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전임 총학생회의 임기 만료일(12월 31일) 다음 날인 1월 1일부터 개시된다.

제2절 총학생회 집행국

제33조 (지위) 총학생회 집행국은 본 회의 최고 운영·집행 조직이다.

제34조 (구성)

- ① 총학생회 집행국은 각 집행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 ② 각 집행국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국 구성원의 경우 총·부총학생회장의 동의하에 둘 수 있다. 단, 총학생회 집행국의 구성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은 우선적으로 총·부총학생회장에게 있다.
- ③ 회칙에 위배 되지 않는 선에서 집행국을 추가 또는 수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업무 및 권한)

- ① 총학생회 집행국은 총학생회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집행의 최고 권한을 가진다.
- ② 총학생회 집행국은 운영·집행 조직이지만 총학생회 주관의 단독행사 및 단기사업 혹은 긴급한 사안의 경우 운영·집행 이상의 의결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③ 총학생회 집행국은 중운위의 의결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중운위의 원활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중운위 결정사항에 대해 총학생회 집행국 내 공유
 2. 총·부총학생회장을 제외한 총학생회 집행국 구성원 중 1인 이상의 중운위 참관
 3. 총학생회 집행국 업무 진행 및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전달과 자료 제출

제 6 장 단과대학 학생회

제36조 (지위)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학의 대표성을 띠는 최고 자치조직이다.

제37조 (구성)

- ① 단과대학 학생회는 당해 단과대학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 ② 단과대학 학생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단과대학 집행부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고 단과대학 전학대회,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단, 단과대학 특성에 따라 단과대학이 필요로 하는 기타 자치단체 및 산하기구를 둘 수 있다.

제38조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 ①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단과대학을 대표하며 학운위 위원, 중운위 위원이 된다.
- ②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단과대학 전학대회,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③ 단과대학 부학생회장은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위를 계승하고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 ④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은 단과대학 집행부에 대한 임명 동의권 및 해임 의결권을 가진다.

제39조 (단과대학 전체 학생대표자회의)

- ① 단과대학 전학대회는 단과대학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② 단과대학 전학대회는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단과대학 집행부, 단과대학 소속 학과 정·부학생회장, 각 학년 학생대표가 기본 구성원이 된다. 단, 추가적으로 단과대학 특성에 맞게 재구성될 수 있으며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 ③ 단과대학 전학대회 의장은 당해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단과대학 학생회장 궐위시 단과대학 부학생회장이 맡는다.

제40조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 ①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는 상설적 단과대학 의결기구이다.
- ②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단과대학 집행부 사무국장, 당해 단과대학에 소속된 각 학과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단과대학 특성에 따라 단과대학이 필요로 하는 집행부, 기타 자치단체 및 산하기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부서 국장 및 차장, 단체, 기구의 대표자까지 포함될 수 있다.

제41조 (업무 및 권한)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학에 관련된 자치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그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42조 (회칙 및 조직) 단과대학 학생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가지며, 그 회칙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제 7 장 학부·전공·학과 학생회

제43조 (지위) 학과 학생회는 학부·전공·학과의 대표성을 띠는 최고 자치조직이다.

제44조 (구성)

- ① 학부·전공·학과 학생회는 학부·전공·학과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 ② 학부·전공·학과 학생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학과 소속의 인원들로 구성된 학부·전공·학과 학생회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제45조 (학부·전공·학과 정·부학생회장)

- ① 학부·전공·학과 학생회장은 학부·전공·학과 학생회를 대표하며 학운위 위원이 된다.
- ② 학부·전공·학과 부학생회장은 학부·전공·학과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부·전공·학과 학생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위를 계승하고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제46조 (업무 및 권한) 학부·전공·학과 학생회는 학부·전공·학과에 관련된 자치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그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47조 (재정) 학부·전공·학과 학생회의 재정은 학부·전공·학과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금액의 경우 학부·전공·학과 학생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48조 (회칙 및 조직) 학부·전공·학과 학생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가지며, 그 회칙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제 8 장 수원 동아리연합회

제49조 (지위) 수원 동아리연합회는 본 회의 모든 수원 중앙 동아리 및 수원 중앙 동아리 회원들의 대표 자치단체이다.

제50조 (구성) 수원 동아리연합회는 해당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수원 중앙 동아리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51조 (수원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① 수원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수원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학운위 위원, 중운위 위원이 된다.

② 수원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수원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보좌하며 수원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위의 승계 및 권한과 업무를 대행한다.

제52조 (업무 및 권한) 수원 동아리연합회는 수원 동아리에 관련된 자치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그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53조 (회칙 및 조직) 수원 동아리연합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가지며, 그 회칙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제 9 장 신문방송사

제54조 (지위) 신문방송사는 본 회의 모든 학생 언론출판인들의 대표 자치단체이다.

제55조 (구성) 신문방송사는 방송기획국, 신문편집국, 영자신문편집국, 웹지운영국으로 구성한다.

제56조 (신문방송사 정·부의장)

① 신문방송사 의장은 신문방송사를 대표하며 학운위 위원, 중운위 위원이 된다.

② 신문방송사 부의장은 신문방송사 의장을 보좌하며 신문방송사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위의 승계 및 권한과 업무를 대행한다.

제57조 (업무 및 권한) 신문방송사는 학생언론출판인들의 자치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학생언론출판에 관련되는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58조 (회칙 및 조직) 신문방송사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가지며, 그 회칙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제 10 장 서울 동아리연합회

제59조(구성) 서울 동아리연합회는 서울 동아리에 등록된 모든 서울 동아리로 구성한다.

제60조(회장)

1. 서울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서울 동아리연합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선출 방법은 자체 회칙

에 의한다.

2. 회장은 서울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하여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제61조(업무 및 권한) 서울 동아리 연합회는 모든 서울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서울 동아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서울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62조(회칙) 서울 동아리 연합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학생회 회칙에 준하여 독자적인 회칙과 조직을 갖는다.

제 11 장 사생자치회

제63조 (지위) 사생자치회(이하 '사생회')는 본 회의 기숙사 사생들의 대표 자치단체이다.

제64조 (구성) 사생자치회는 본 회의 기숙사 사생 전체로 구성한다.

제65조 (사생자치회 정·부회장)

① 사생자치회 회장(이하 '사생회장')은 사생회를 대표하고 학운위 위원이 된다.

② 사생자치회 부회장은 사생회장을 보좌하며 사생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위의 승계 및 권한과 업무를 대행한다.

③ 사생자치회 정·부회장은 사생회 위원 선출에 대한 임명권 및 해임 의결권을 가진다.

제66조 (업무 및 권한) 사생회는 기숙사 및 기숙사 사생에 관련된 자치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그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67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별개로 기숙사비 고지서에 명시되어 선택 납부하는 방식이며 사생회비 금액의 경우 사생회 집행부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68조 (회칙 및 조직) 사생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가지며, 그 회칙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제 12 장 특별기구

제69조 (설치) 특별 기구는 본 회의 회칙에 근거한 특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운위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단, 특별 기구의 존속기간은 해당연도만 포함되며 중운위의 의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학운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의 인준을 전제로 한다.

제 13 장 재정

제7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한 학생회비와 보조금(교비 지원금)을 주로 하나 그 외로 본 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납부(납입) 예산이 있을 시 재정에 포함된다.

제71조 (회계연도)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전임 총학생회의 임기 만료일(12월 31일)의 다음날인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② ①항의 회계연도는 학기별로 2회 구분하며, 각 학기마다 예산 및 결산을 시행한다.

제72조 (회비)

① 본 회의 학생회비 금액은 중운위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② 본 회의 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며 납부된 회비의 관리는 총학생회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제73조 (예산) 예산은 본 회를 구성하는 단과대학 및 자치단체에 각각 편성하며, 중운위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제74조 (경정예산) 예산 수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과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중운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5조 (예산집행)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부·전공·학과 학생회 및 자치단체의 대표는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6조 (예산분배)

①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의 학생회비 배분 비율은 중운위 내부 협의 및 심의를 통해 의결한다.

② 각 자치단체는 전년도 가인출액에 준하여 가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본 항에 의거 전년도 기준을 참고하여 협의를 통해 가감한다.

제77조 (결산보고)

① 본 회의 각 단위의 결산보고는 매 학기 종료 전후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 시 금전출납부, 결산보고서, 증빙서류철(영수증), 회의록, 운영일지, 비품목록, 인수인계서, 행사록, 수신발신공문철 등 예산집행 여부가 명시된 증거(검증)자료만 해당되며 제출된 서류는 감사위원회에서 보존한다.

③ 결산보고 후 비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주관하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8조 (감사위원회)

① (목적) 감사위원회는 재정 감사를 관장하는 특별 기구로 본 회의 각 단위 학생회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며 정직하고 신뢰받는 학생회를 구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상)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수원 동아리연합회, 서울 동아리연합회, 신문방송사, 사생자치회 등 본 회의 운영·집행 조직을 포함하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단체 및 기구는 감사 대상이 된다. (이하 감사 대상에 대하여 '피 감사단체'라 칭한다.)

③ (감사의 범위 및 구분)

1. 회원이 납부한 학생회비와 보조금(교비 지원금)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로 본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추가 납부 예산이 있을 시 감사 범위에 포함한다.

2.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④ (구성)

1. 감사위원은 피 감사단체에 속하지 않는 자로 구성된다.

2. 당해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8명이 공개 모집을 통하여 단대별 1인씩 감사위원을 구성한다.

3. 공개 모집을 통한 인원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단과대학 학생회장에게 동일 소속 대학 1인 추천 권한이 부여된다.

4. 감사위원 선출 이후 학운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인준을 받아야만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공고 및 소집)

1. 감사위원회는 피 감사단체의 회계에 대한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진행하기 최소 10일 전에 계획 및 이유를 명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모든 감사 종료 후, 감사 자료와 결과를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5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3. 본 회의 회원 500인 이상, 학운위, 중운위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감사위원장은 14일 이내에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⑥ (업무 및 권한)

1. 피 감사단체의 회계에 대한 결산 감사 및 관리
2. 감사에 필요한 피 감사단체 관계자의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청
3. 감사 시행 결과에 대한 징계 및 건의
가. 경고
나. 탄핵안 발의
4. 재감사 시행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⑦ (감사의 자료 및 내용)

감사의 자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사 자료
가. 회계장부 내역
나. 은행거래내역
다. 영수증 증빙자료
라. 수령증
2. 감사의 내용
가. 회계감사 : 학생회비 올바른 사용 및 감사 자료 확인

⑧ (의무)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들은 감사업무와 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우들의 대리자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 시행세칙의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⑨ (권리) 감사위원회 위원은 당해 감사에 대해 활동을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위원의 중도 사퇴를 상정할 수 있다.

⑩ (의결) 의결은 일반 의결과 징계 의결로 나뉜다. (감사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1. 일반 의결 : 감사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징계 의결 : 경고의 경우 감사운영위원회의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탄핵안 발의의 경우에는 학운위 이상의 기구에서 의결한다.

제79조 (감사 시행세칙) 기타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감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4 장 선거

제80조 (선거권)

① 운영 및 집행 조직: 총·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1. 본 회의 회원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2. 당해 학기에 해외에 나가 있는 교환학생은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3. 당해 학기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선거권을 갖는다.
4. 재적 회원 수에서 4학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투표 참여시 재적 회원 수에 포함 시킨다.

② 자치단체: 수원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서울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신문방송사 정·부회장, 사생자치회 정·부회장

1. 수원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서울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신문방송사 정·부회장, 사생자치회 정·부회장의 경우 자체 회칙에 준한다.
2. 기타 세부 기준은 전 항에 기초한다.

제81조 (피선거권) 본 회의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① 운영 및 집행조직: 총·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3. 입후보는 2인 1조로 한다.
4. 학생회 조직의 경우 본 회의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선거를 적용한다.

② 자치단체: 수원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서울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신문방송사 정·부회장, 사생자치회 정·부회장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자치단체의 경우 각 특성에 따라 중앙선거, 해당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선거 등 상이하다.
3. 중앙선거 입후보의 경우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4. 자체 선거의 경우 입후보 자격요건은 각 자치단체 내부 회칙에 준한다.
5. 입후보는 2인 1조로 한다. (단, 신문방송사의 경우 정·부 입후보 각각 1인을 원칙으로 한다.)

③ 7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 취득학점이 115학점을 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단, 본 항은 중앙선거에만 적용된다.

④ 재학 중 이미 당선되었던 자는 동일 단위의 동일직위에 있어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⑤ 후보 등록 마감 일시까지 사퇴하지 않은 현직 간부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사무에 관련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82조 (선거의 방법) 본 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한다.

제83조 (선거의 시기)

① 총·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선거(중앙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원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서울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신문방송사 정·부회장, 사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는(자체 선거) 각각의 회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③ 11월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거나,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단위의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재선거는 선거 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번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제8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위별 추천 인원을 최소 기본 구성으로 한다. 총학생회의 경우 중운위원무관 총학생회 내부 2인, 단과대학의 경우 중운위원 제외하고 각 대학마다 1인씩, 자치단체의 경우 중운위원 제외하고 중운위에 소속된 단체에서 1인씩 선정하여 구성한다. 서울 캠퍼스 중선위의 경우 중선위원 2인을 선정한다. 단, 중선위 구성이 완료된 이후 필요에 따라 중선위원 내부 협의를 통해 추가 임명할 수 있으나 추가된 인원에 대하여 중운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심의 및 인준을 원칙으로 한다. 중선위원장의 경우 구성된 중선위 내부 투표를 통해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결권을 갖는다.

③ 중선위 최소 기본 구성원 이외에 중앙선거를 적용하는 자치단체가 존재할 시 추가하여 구성원을 확장할 수 있다.

제85조 (임기)

① 본 회의 모든 운영·집행 조직 및 자치단체 대표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모든 운영·집행 조직 및 자치단체 대표자의 임기는 1년 단임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86조 (보궐선거)

① 총·부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모두 궐위되었을 경우 또는 학생총회의 탄핵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잔임 기간이 1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12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과대학 학생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모두 궐위되었을 경우 또는 단과대학 전학대의 탄핵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잔임 기간이 120일 이상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12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 학생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87조 (선거시행세칙) 기타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에 논의 마련한다.

제 15 장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제88조 (지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의 궐위기간 동안 그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89조 (권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갖는다.

제90조 (의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모든 의결사항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91조 (구성)

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다.

1.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될 때
2. 총·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될 때
3. 총·부총학생회장이 모두 탄핵될 때
4.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선출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이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찬성 인준을 받지 못했을 때

②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국원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부위원장과 제94조 (비상대책위원회 집행국원)에 따라 파견된 위원들로 구성한다.

③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0000(해당연도)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로 한다.

④ 단, 제86조 (보궐선거) ①항에 의거하여 잔임 기간이 120일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단과대학 학생회장 중에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 연도 중앙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한다.

제92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91조 (구성) ①항의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7일 이내에 구성하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다. (단, 11월 선거가 무산된 경우 당 해 학기의 수원·서울 동아리연합회,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구성한다.)

1.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

2.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②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다. (단, 11월 선거 무산에 의한 구성은 차기 연도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한다.)

③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호선된 1인으로 한다. [단, 11월 선거 무산에 의하여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해당 연도 중앙운영위원 중 해당 연도 중앙운영위원회에 의하여 호선된 1인이 3일 이내에 차기 중앙운영위원회(임기 시작 시점과는 무관)의 인준을 거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의 직을 수행한다.]

④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로 호선될 수 없다.

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 선출 즉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해야 한다. 등록기간의 경우, 최소 6일 이상으로 한다.

⑥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를 선정하여야 하며 2차 회의에서 간선투표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⑦ 제1, 2차 회의의 소집·진행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이 한다.

⑧ 제1, 2차 회의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 이후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단, 제1차 회의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일 기준 6일 이후에 진행한다.

⑨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회의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후 24시간 이후에 해소된다.

1.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과정 (후보자 정보·투표방식·투표결과)

2.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결과 (선출자 정보)

3.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

제93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은 총학생회 비상 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간선투표로 선출한다.

②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후보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중앙운영위원직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

③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선출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은 해당 연도 확대운영위원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인준 절차를 선출 이후 7일 이내에 거쳐야 한다.

제94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국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이 선출되면 3일 이내에 해당 연도 중앙운영위원 중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각 단과대학 소속 단위에서 임명한 1인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국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운영위원 내부 협의 및 심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단, 11월 선거 무산에 의하여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시 다음 해 1월 1일 이후에 해당 연도 중앙운영위원 중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파견한다.)

제95조 (임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11월 선거 무산이 아닐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16 장 총학생회 인수위원회

제96조 (구성)

①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신 당선된 총·부총학생회장이 구성한다.

② 총학생회 인수위원회 구성은 신임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당선 이후 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③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로 당선되었을 경우, 설치하지 않는다.

④ 11월 선거 무산일 경우, 당해 총학생회장이 구성하며 인수자는 당해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위원장으로 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추후 출범하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 그 인수 내용을 유실 없이 보존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할 의무 및 책임을 지닌다.)

제97조 (인수위원회 위원)

① 당해 총학생회에서는 회장을 포함한 국장급 임원 최소 3인 이상으로 한다.

② 신임 총학생회에서는 신임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을 포함한 차기 총학생회 국장급 임원 최소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신임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은 직전 총학생회 임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임명할 수 있다.

제98조 (인수위원회 위원장)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회 설립 당해 총학생회 내에서 신임 총학생회장이 지명하는 1인으로 한다. (단, 11월 선거 무산일 경우에는 당해 총학생회장이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99조 (업무)

①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차기 총학생회의 조직 및 기능의 파악
2. 차기 총학생회 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을 위한 준비
3. 차기 총학생회의 업무와 관련된 필요사항을 차기 총학생회로 인수인계

제100조 (해소)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당해 총학생회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동시에 해소된다.

제 17 장 회칙개정

제101조 (발의) 본 회의 회칙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2/3 이상의 발의
- ② 확대운영위원회 재적 1/3 이상의 발의

③ 회원 500인 이상의 서면 발의

제102조 (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공고하되 그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제103조 (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 기간이 경과한 후 20일 이내에 학운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해당 의결기구 재적회원 2/3 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4조 (공포) 의결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18 장 부칙

제105조 (의결의 방법)

① 본 회의 모든 의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구성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② 본 회의 의결 결과가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③ 본 회의 모든 의결은 반드시 의결 시 정족수를 확인하고, 정족수 성립을 확인 후 인원의 과반수 이상, 혹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06조 (참관)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와 관련된 모든 회의에 참관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 회의 모든 회의에 참관한 자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단, 회의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회의에 참관한 자가 정숙하지 않거나 장내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그 회의의 의장이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7조 (시행세칙) 시행세칙은 본 회의 필요에 따라 회칙에 근거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본 회칙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효력의 발생) 본 회칙은 학운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경과 조치) 본 개정회칙은 공포 이전에 구성된 자치기구는 본 개정회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한다.

제3조 (회칙의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운영세칙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단, 관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관련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신설 기구) 신설된 자치기구는 출범한 이후에 회칙에 명시한다.